

『2026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사업』

지원대상 모집공고

지역 안경산업의 무역기술장벽 극복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「2026년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」의 모집공고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안광학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6년 06월 08일

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장

1 사업개요

□ 추진목적

- 지역 안경산업의 무역기술장벽(TBT) 극복을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을 지원하여 기업 및 조합·단체의 해외진출 역량 강화 및 수출판로 확대

□ 모집기간 : 2026. 06. 08.(월) ~ 06. 22.(월), 18:00까지

□ 사업기간 : 협약체결일 ~ 2026. 12. 31.(목)

□ 지원규모 : 9건 내외

※ 기업(8개사)과 조합·단체(1개소)는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 평가

※ 예산 소진 시까지 추가 지원 예정, 신청 현황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

□ 지원건수 : 기업 또는 조합·단체당 1건

□ 지원금액

- 기업 : 1개사당 최대 1,300만원 한도 내 지원
- 조합·단체 : 1개소당 최대 1,600만원 한도 내 지원

□ 지원항목

- 해외규격인증 : FDA, CE 등 해외규격인증 (붙임 1 : 국가별 해외규격인증 참고)

- 인 증 비 : 인증서 발행비, 인증신청비, 연회비, 심사비,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
· (심사비)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, 서류심사
· (법정대리인 선임비) 인증(또는 등록) 절차상 필수적으로 현지 법정대리인(책임자)을 선임해야 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
- 시 험 비 :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한 비용
- 컨설팅비 : 인증획득을 위한 기술 자문료, 서류 대행료 등
- 기 타 : 인증 취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진흥원이 인정하는 항목

※ 부가가치세, 송금수수료, 환전수수료 등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을 제외한 공급가액의 80% 지원

2 신청자격

□ 신청자격

- 대구지역 內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소재한 안광학 산업 관련 기업 또는 조합·단체
 - ① 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따른 중소기업
 - ② 「협동조합기본법」 또는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협동조합·조합
 - ※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보유, 정관상 산업·수출·인증 관련 목적사업 명시
- 신청품목 : 안경테, 선글라스, 렌즈, 콘택트렌즈, 안경 액세서리, 광학기기 등

□ 신청 제외대상

- 아래 지원제외 사유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- ※ 지원업체 최종 선정 이후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됨이 확인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

- 1) 필수제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신청서가 허위 또는 거짓인 경우
- 2) 기업(또는 조합·단체)의 부도 또는 휴폐업 상태이거나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
- 3)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조세채납처분이 있는 경우
- 4)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- 5)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- 6) 최근 결산일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
- 7)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‘의견거절’ 또는 ‘부적정’인 경우
- 8) 신청 사업자 및 그 대표자가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
- 9)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 및 시행령 제23조의 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
- 10)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3 및 시행령 제23조의 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경우
- 11) 최근 3년간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0조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에 속하는 경우
- 12)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법령 위반사실로 인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
- 13) 최근 1년간 공정거래 관련법령 위반사실로 인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
- 14) 현행 법령 위반,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참여사업자로서의 신뢰성이 현저히 훼손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
- 15) 진흥원 지원사업의 참여제한 대상 사업자인 경우
- 16) 본 사업을 통해 취득한 해외규격인증을 명의 대여, 대행 또는 제3자 제공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
- 17) 그 외 개별 세부사업에서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

3 평가 · 선정방법

□ 신청대상 평가 및 선정방법

○ 평가단계 : ① 기본요건 확인 → ② 서면평가

○ 평가방법

① (기본요건 확인) 소재지, 생산품목, 신청자격, 참여제한 여부 등

② (서면평가)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평가하며,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

- 기업과 조합·단체는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 평가군으로 구분 선정

- 동점 시 정성평가 총점 → 사업계획 → 해외시장 경쟁력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

※ 최종 동점일 경우, 수출 준비도, 파급효과 등을 종합 고려하여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선정

- 평가위원회 개최 후 2주 이내 평가결과 개별 통보

※ 선정기업의 중도 포기 또는 사업 미완료 시 차순위자(후보기업)에게 지원 가능

□ 선정(평가) 기준

구분		지표명	평점기준
정량 평가 (30)	기업	수출 성장 (10)	- 수출 증가율 ※ $\left[\frac{\text{최근년도 수출액} - \text{직전년도 수출액}}{\text{직전년도 수출액}} \times 100 \right]$ □ 3점(성장없음) □ 7점(20% 미만) □ 10점(20% 이상)
		수출 비중 (10)	- 매출액 대비(직접)수출액 비중 ※ 최근년도 기준 □ 3점(10% 미만) □ 7점(40% 미만) □ 10점(40% 이상)
		수출 준비 (10)	①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② 홈페이지 보유 ③ 외국어 카탈로그 ④ 제품 홍보 동영상 ⑤ 해외전시회 참여 □ 3점(미보유) □ 7점(2개 이상) □ 10점(4개 이상)
	조합 및 단체	수출 금액 (10)	- 최근년도 조합원 합산 수출액 □ 5점(100억 미만) □ 8점(300억 미만) □ 10점(300억 이상)
		수출 비중 (10)	- 최근년도 기준 조합원 수 대비 수출참여 기업 비율(%) □ 5점(10% 미만) □ 8점(20% 미만) □ 10점(20% 이상)
		수출 역량 (10)	- 최근 3년간 조합원 합산 수출국가 수 □ 5점(10개국 미만) □ 8점(15개국 미만) □ 10점(15개국 이상)
정성 평가 (70)	사업계획 총실성	계획 총실성 (25)	- 해외규격인증 취득 필요성 및 목적 - 인증획득 후 해외판로 확보 등을 위한 구체적 계획 - 기업 또는 조합의 담당 인력 전문성 및 확보 여부 - 인증 취득을 위한 조직(기업/조합)의 의지 및 지속성
	해외시장 경쟁력	전략 및 경쟁력 (25)	- 제품의 디자인 및 품질의 우수성 및 독창성 - 해외 진출 경험, 이전 사업 참여 경험이나 노하우 - 국내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전략 - 수출대상국 및 바이어 오더 등 수출예정 현황
	파급성 및 기대효과	파급성 (20)	- 인증 취득 후 계획(사후관리, 홍보, 판로 확대 등) - 인증 취득 후 예상되는 매출·수출 증대 효과 - 조합의 경우, 조합원 및 지역 산업 전반으로의 파급 효과
가점(5)	최초 지원대상(5)	- 3년간진흥원 지원사업 내 해외규격인증획득 관련 지원경력 없을 시	

※ 정량평가는 증빙 가능한 최신자료 기준으로 산정하며, 기준연도는 동일하게 적용함.

단 수출성장률은 최신 연속 2개년도 자료로 산정함.

4 지원방식 및 절차

□ 추진일정 및 절차



* 상기일정은 사업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□ 지원금 지급절차

- (선정사업자) 해외규격인증획득 결과물 및 증빙서류 제출
- (진 흥 원) 결과보고서 및 타 기관 중복수혜 검토
- 중복 수혜 사실이 없는 경우 지원금 최종 지급

* 2026년 01월 28일 이후 해외규격인증 및 갱신 획득 완료건(비용지출 포함)에 한하여 소급적용 및 지원

□ 지원관련 유의사항

- 본 사업은 해외규격인증획득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증 결과의 적합성(제조 또는 라벨, 시설등록 등), 통관 및 사후 규제조치 등 해외 규제기관의 판단 결과에 대하여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은 어떠한 법적·행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
-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규격인증획득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(단, 제품분야, 신청품목,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)
 - 중복 수혜 발견 시 지원금 회수 및 향후 진흥원이 운영하는 지원 사업 참여 불가 예시) FDA인증비용을 타 기관에서 지원받은 후 당해 지원 사업에 재차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중복 수혜로 추후 환수 조치 검토

5 신청방법

□ 신청기간 : 2026. 06. 08.(월) ~ 2026. 06. 22.(월) 18:00까지

□ 신청방법 : 신청양식 다운로드 후 온라인 접수

○ 접수처 : 아이웨어 포탈 홈페이지

www.eyewearportal.or.kr → ‘한국안광학산업 지원사업 관리시스템’ 접속하여 온라인 접수

* 첨부자료 ‘[안내서] 온라인 접수 시스템 활용법 안내서’ 숙지 후, 온라인 접수 시스템 이용

* 파일 제목은(업체명_신청서명) 수정 후 제출(ex. KOIA_제품규격인증지원)

* 접수 마감일자가 도래할수록, 온라인 접수시스템 접속량 증가 등의 사유로 예상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빠른 신청 바랍니다.

* 온라인 접수 진행 시, 아이웨어포탈 홈페이지의 오류로 인해 접수가 어려울 경우 사업 담당자 사전연락(필수) 후, 접수기간 내 이메일 접수 필요(담당자 메일 : asphere85@koia.or.kr)

6 제출서류

□ 제출서류(신청서식 참조)

연번	구분	내용	비고		
1	서식 1	기본 서류 (공통)	2026년 제품규격인증지원(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)사업 참여신청서 및 계획서	필수작성	
2	서식 2		개인정보 수집·이용·활용 동의서(대표자)	필수작성	
3	서식 3		지원사업 성실참여 협약서	필수작성	
4	서식 4		중복지원금지 협약서	필수작성	
5	증빙 서류	기업	법인등기부등본	해당 시, 제출	
6			사업자등록증	필수제출	
7			접수증 및 견적서(인증, 시험, 컨설팅 등)	필수제출	
8			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	필수제출	
9			당사 매출액 증빙서류 - 최근 2개년도 매출증빙(부가가치세 신고자료 혹은 재무제표) * 정량평가 기준연도와 동일하게 적용	필수제출	
10			당사 수출액 증빙서류 - 최근 2개년도 수출실적증명서 * 수출실적증명원(한국무역통계진흥원), 수출실적확인서(무역협회)	필수제출	
11			조합 및 단체	설립허가서 / 설립신고필증 / 등록증 중 택 1	필수제출
12				정관 및 대표자 선임 증빙 - 목적사업에 안경 및 안광학 산업지원 명시 여부 확인 -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(대표자 선임 내용 포함)	필수제출
13				조합원(회원사) 명부 및 조합원 사업자등록증 사본	필수제출
14		접수증 및 견적서(인증, 시험, 컨설팅 등)		필수제출	
15		결산서 또는 수입·지출 결산서(최근 2개년)		필수제출	
16		조합 주도의 수출·인증 지원 실적 증빙자료 - 공동수출, 인증, 컨설팅 수행 내역 또는 조합원 합산 수출실적 요약표 (합산 수출액, 수출참여 기업 수 및 비율, 수출국가 수 확인 가능 자료 포함)		필수제출	
17		- 추가 요건	최근 3년 이내 해외지식재산권 및 규격인증 증빙서류 ※ 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 분야 가능(상표 제외, 국내 특허상표 미인정)	해당 시, 제출	
			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, 홈페이지 보유, 외국어 카탈로그, 제품 홍보 동영상, 해외전시회 참여(신청서에 기재 및 증빙자료 제출)	해당 시, 제출	

※ 증빙서류는 최신자료로 제출 요망

□ 결과서류

- 해외규격인증 획득 결과물
- 해외규격인증 획득 관련 비용지출 증빙서류
 - ※ 결과보고서 제출일 별도 안내에 따라 기한 내 서류 제출

7 기타 유의사항
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, 한국안광학 산업진흥원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,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청 포기로 간주
- 제출된 서류가 허위, 위·변조,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,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됨. 평가결과는 임의로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결과에 대하여 신청기업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
- 참가대상의 허위계산서 발행 등의 부당거래 행위 적발 시, 해당 사업 지원 취소 및 향후 지원 사업 참여 제한, 고발 조치 등 엄벌
- 사업 공고문 등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
- 최종 선정 후에라도 사업 불성실 참여 및 진흥원 요청사항 불이행에 따른 참가 자격 상실이 가능함

8 문의처

사업명	주관부서	담당자	연락처	이메일
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	전략연구팀	김정현 선임	053-350-7852	asphere85@koia.or.kr

[붙임 1] 국가별 해외규격인증 목록

[붙임 2] 2026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끝.